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4. 3. 2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4년 3월 20일 14:00 ~ 15:02

2. 회의방식 : 대면회의

3. 출석위원

김 주 현 위 원 장

김 소 영 부위원장

이 형 주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이 복 현 위 원

(의결 제55~75호, 보고 제9~12호)

유 재 훈 위 원

(의결 제54호, 제56~75호, 보고 제9~12호)

유 상 대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 1) 2024년도 제4차 및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 및 2024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 보고

□ 2024년도 제4차 및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2024년도 제5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의사록을 서면 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54호 『2023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상정함

- (위원)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 주관위원인 김용재 상임위원께서 소위 심의경과를 설명해 주시겠음.
- (위원) 금융감독원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음.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2023년 금융감독원 결산안을 검토하였음.

먼저 금융감독원 결산안 주요 내용임. 2023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총수입은 4,275억 원으로 총 예산 3,969억 원 대비 306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총지출은 3,868억 원으로 총 예산 3,969억 원 중 97.5%를 집행하였고 101억 원의 지출불용이 발생하여 수지차익은 총 407억 원 발생하였음. 해당 수지차익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에 반환될 예정임. 다음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및 과거 예·결산 부대의견 이행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금번 예·결산심의 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총 6개 분야에 대해 부대의견을 부가하였음. 금감원 예·결산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차년도 예산을 병기하는 등 보고자료를 보완하도록 하였고,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 및 DART의 원활한 중장기 추진을 위한 보고사항을 명시하였음. 아울러 금융회사 검사 및 금융교육 사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보고사항, 실무자들의 국제회의 참가를 독려하여 국내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고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대해 부가의견을 부가하였음. 부대의견의 이행결과는 금융감독원이 차후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임.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금융감독원 예·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55호 『예금보험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자보호법」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예금보험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주택금융공사의 2023년도 결산안을 승인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7호 『(주)비드펀딩 등 3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취소안』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 등록취소를 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58호 『(주)나이스디앤비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나이스디앤비의 임원 변경 보고의무 불철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임원 변경의무 불철저에 대해 검사('22.8.22)前 보고를 완료하여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50% 감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59호 『(서울)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기업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고, 예금인출상황 등 보고의무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9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오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건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보고 의무 위반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위반행위로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원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서울)오케이저축은행의 동 위반에 대하여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확약서를 징구하며,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60호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경기)한국투자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1호 『인트러스트투자운용(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인트러스트투자운용(주)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과태료를 부과 건의
하는 내용

○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1호 안전과 관련하여 인트러스 투자운용(주)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임원 선임 사실 미공고·미보고’ 건은 창업 초기 소규모 금융회사의 단순·경미한 위반이나 소비자 피해가 크지 않은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위반동기들 상에서 중으로 감경하여 과태료 금액을 5,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습니다.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62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멀티에셋자산운용의 합병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멀티에셋자산운용 간 합병을 인가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3호 『OO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위원) 최근에 감리업무 관련되어 금감원 내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기록에 남길 의도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물론 양정이라는 것이 사실 주관적이고 시각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무조건 양정을 낮게 하자는 의도도 전혀 아님. 다만, 저희가 최근 회계감리와 관련되어 감리위원회라든가, 증선위에서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많이 감경되는 사례가 다른 제재절차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감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수가 설득될 수 있는 내지는 다수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음. 예를 들어 이 건만 하더라도 감사법인의 중과실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따지다 보면 ‘고의’, ‘중과실’은 일반과실과는 분리되어서 ‘중과실’은 ‘고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과실’을 실제로 하는 것들은 사실상 고의로 추정은 되나 고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완전히 일탈하여 형해화 되는 경우를 ‘중과실’로 보는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건에 있어서는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련문서를 위조했다거나 대체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제3자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서상의 증빙을 확인했던 점에서 만연히 ‘중과실’로 의율하기 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그것이 우리 법치주의적 원칙이라든가, 특히나 침익적 행정작용의 예측가능성에 비추어서 좀 더 단단히 우리 내부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음.

물론 새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사전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으면 1~2년 사이에 고친 기준이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감리 위원들과 증선위원들이 수궁할 수 있는 기준들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저희가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감원장의 지위가 아니라 금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감원 국장께도 이 부분은 흘러든지 말고 단단히 챙겨서 차후에 감리위나 증선위 그리고 금융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보고자) 알겠습니다.
- (위원)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최대주주와 경영진 모두 교체되었고 회사가 이후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선택도 없는 상황이어서 증선위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 대신 기존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잘못된 것을 현재 회사가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기준을 마련해 보자는 얘기를 했었음.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함.
-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감리단계 내지는 조사단계에서 고려가 되었어야 하는 양정사유인데 만연히 과거 습관적으로 한 것들로 볼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언급한 것이고 이 건의 결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개별 건에 숨겨져 있는 쟁점이 과거 법인의 책임을 경영진이 교체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지 사실 정답을 찾기는 어려움.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 그런 것이고, 회계팀 감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와는 다르게 일반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양정과 요건 사실의 적용과 관련되어 조금 더 엄정하고 향후 반박가능성이 적은 방식으로 신중하게, 단단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자기 반성적 말씀을 올린 것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4호 『□□□□□□(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부감사법 제5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공시한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5호 『신한투자증권(주)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한투자증권(주)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6호 『유안타증권(주)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유안타증권(주)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

○ (위원) 이 건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나온 사안임. 금감원에서
50% 감경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법의 운용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자체감사 하는 것에서 50%만 감경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음. 예컨대
이런 경우는 90% 감경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운용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음.

○ (위원) 50% 이상은 안 되는지?

○ (위원) 50%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음. 자체감사를 했고 정당하고
적합하게 자체감사가 이루어졌다면 면책조항도 있으니 가능하면

90% 정도로 감경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 금융위 과와 금감원 국이 같이 협력해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규정에 반영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세우는 것들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 같음. 빨리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음.
- (위원) 과태료·과징금에 대해서 제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건은 그것과 같이 맞물리는 것이고, 좀 더 유연한 기준을 만들려면 규정도 개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갖가지 사항을 다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함. 행정의 자율 구속의 원칙이 있고, 선례들이 있어서 이것만 차별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을 했음.
- (위원) 필요한 제도를 검토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7호 『신용보증기금 정관 일부변경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신용보증기금의 정관 개정을 인가하는 것으로 정관 개정은 신용보증기금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팩토링을 중소·중견기업 팩토링으로 변경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8호 『메트라이프생명 대주주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메트라이프생명 대주주 변경(→메트라이프 UK) 신청을 승인(심사요건 충족)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69호 『(주)카사코리아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 심사안』, 제70호 『두나무(주)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 심사안』, 제71호 『서울거래(주)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 심사안』, 제72호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외 4개사(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안』, 제73호 『(주)콰라소프트에 대한 규제 개선 요청 심사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내용을 설명함

※ 2024년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소비자의 편의가 향상되는 등 금융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내용

- (위원) (주)카사코리아 관련되어 제가 이 내용으로 이해하기로는 자기위험으로 중간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지? 지금 정확하게 (주)카사코리아의 자기자본이라든가 규모는 모르겠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심사한 것인지? 제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나 하면 통상에는 중개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위험이 절연되기 때문에 자산관리자, 운용자의 고유리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산관리자의 고유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운용리스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언뜻 보니까 6개월 얘기가 나왔는데 6개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흑여 레버리지까지 써서 일종의 에퀴티 투자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라든가 운용위험이 생길 부분이 있어 보임.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수료의 전가문제라든가 계열사 부실 부동산 처분문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여기에서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쭙봐야 될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 (보고자) 자본시장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소위원회나 혁신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중에는 각 개별업체에게 자기자본규제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어차피 향후 제도 개선 안에서 관련된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자기자본요건을 규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자기자본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금감원과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음.

-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자산운용사가 부동산을 공·사모로 하는 경우 말고 공·사모로 하는 것에 더하여 어쨌든 자기고유자본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규제체계가 있음. 그것과 이것의 계산가능성(computability)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자면 이미 있는 인허가의 틀이라든가 운용과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혁신서비스로 굳이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 싶음.
- (위원) 사실은 저희들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간담회에서 그 논의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음. 이렇게 되면 여기 자산운용사와 동일해진다, 그래서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방안을 빨리 만들어서 우선 허용을 해 주되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은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됨.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어야 라이선스 이슈들이 해결되는 것이어서,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지만 여기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기자본으로만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그래서 가능하면 레버리지는 안 하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도 대신증권에서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위원) 안전 자체에는 그것이 레버리지가 없고 자본확충의 방법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별도의 영업리스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물론 여기에서의 혁신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토큰증권발행(STO)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넓어지게 되면 새로 법개정하는 것 외에 종전에 운용사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왜냐하면 지금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나중에 제도로 편입될 때 법개정해야 이것을 편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제가 이것만 봐서는 와 닿지 않음. 그리고 만일 이 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 체계에 포섭되거나 아예 규율의 범위에 벗어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점이 점검이 되었는지를 여쭙보는 것임. 자본시장과 사무관님 계시니까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함.

- (보고자) 일단,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카사코리아는 다양한 자본시장법 규정과 관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관련된 중개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개정안이 완료가 되어야 (주)카사코리아도 추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련하는 인가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하는 부분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들과 현재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 충돌이 없도록 그리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해 보겠음.

○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추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주)카사코리아가 선매입을 하기 때문에 자산보유자가 되는데 그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음. 그런데 이 건의 선매입 후 6개월 이내에 신탁으로 넘기게 되어 있고 그 선매입한 자산을 신탁으로 넘기면 사실 (주)카사코리아의 부도위험으로부터 투자자는 절연되는 것임. 그러니까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 하겠다는 (주)카사코리아의 사업모델이 기존 법제에서도 수용 가능한 것이라면 굳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말씀이신 것 같음. (주)카사코리아의 업무 모델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몇 가지, 이런 선매입을 제외하고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한 건들이 들어있음. 신탁 업무의 중개라든지, STO발행이라든지, 이것은 선매입 여부와 상관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유지하되 그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음.

○ (보고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부대조건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것이 논의가 되었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것은 부대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보고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음.
- (위원) 그리고 (주)카사코리아 건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번에 의결을 해도 시기상 문제없는 것인지?
- (보고자) 일단 업체와 소통한 바로는 지금 이 일정을 토대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기는 하다고 전해 들었음.
- (위원) 부동산 가격이 비쌌. 그런데 부동산 매입할 때 자기 자금으로만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금 더 상식적인 얘기이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것만 봐서는 명확하지 않음. 부동산 관련되어 굉장히 리스크도 크고 더구나 샌드박스가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측면도 있고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의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건은 오늘 의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건들만 의결하고, (주)카사코리아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그 보완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었으면 좋겠음. 위원님들, 다른 의견 또 있으신지?
- (위원) 사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간담회 때 그런 질문까지 했었음. 만약 펀드를 만들어서 자산을 사고 그것을 신탁으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직접 레버리지 안 하고 펀드를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까지 했음. 그랬더니 자본시장과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되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야 라이선스를 더 주든지 말든지 이런 행위가 일어날 텐데, 그 부분이 아직 덜 되어서 여기는 고민은 고민인데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일단 수용하겠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음.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음. 어차피 2주 후임.

- (보고자) 일정 관련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체가 신고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사를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 요구를 한 상태임.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연기가 되어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모집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렇다면 일단 5개 안건 중 (주)카사코리아에 대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주)카사코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69호 안건은 보류하고 제70호부터 제73호까지 4개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제69호 안건은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제69호는 보류하고, 나머지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4호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75호 『금융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9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0호 『2023년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실태평가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1호 『2023년 금융위·금감원 행정지도·감독행정
작용 현황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12호 『2023년 금융위원회 음부즈만 활동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5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2분 폐회)